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29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0. 4. 29. 접수 제7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4.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0. 4. 29. 접수 제79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9. 6. 25.부터 그 사용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140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6. 'E은 원고에게 14,905,933원 및 이 중 11,558,399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4%의, 2,7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8. 27.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피고와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F 앞으로 3/7 지분, 피고와 E 앞으로 각 2/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20. 3. 25.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5.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3/7)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5.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또한 피고는 2020. 4.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2/7)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4.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자력 상황

E은 2020. 3. 25. 당시 ① 광주 남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 가액 131,000,000원 상당,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41,420,257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44,970,900원 $\times$ 2/7) 상당,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 가액 31,065,193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44,970,900원 $\times$ 3/14(= 망인 지분 3/7 $\times$ E의 상속지분 1/2)] 상당 합계 203,485,45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① 원고에 대하여 16,927,033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95,559,907원(이 사건 G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③ H은행에 대하여 10,600,375원, ④ I대부에 대하여 17,171,547원, ⑤ J대부에 대하여 53,360,740원, ⑥ K카드에 대하여 5,960,674원 합계 199,580,276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2020. 3. 25.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망인 지분 $3/7 \times E$ 의 상속지분 $1/2$)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E의 나머지 적극재산 가액인 172,420,257원(= 203,485,450원 - 31,065,193원)이 E의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E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2020. 4.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E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G아파트는 피고와 E의 부모(망 N 및 망인)가 E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인바, 피고와 E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G아파트를 E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그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는 E에게 총 73,258,43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E에게 빌려주거나 E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준 돈에 대한 반환채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은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G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피고와 E의 부모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특별수익 주장으로 보아 이 사건 G아파트를 E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G아파트가 E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돈 24,000,000원에 E 명의 담보대출금 30,000,000원을 합하여 O 주택을 매수하였고¹⁾,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이 사건 G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 E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 내지 O 주택 구입자금을 생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피고의 위 주장을 선의 항변으로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1) 피고는 위 담보대출금을 부모가 납입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영암군 P 답 3196.9m²
2. 전남 영암군 Q 답 5330.8m². 끝.